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④ 비상대비교육 참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한다.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정부 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②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이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에 대한 준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그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 ㄴ. 훈련 참가자의 인도·인수와 관련하여, 인도·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ㄷ.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게 할 수도 있다.
- ㄹ.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 하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비상대비 훈련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장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 ④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으로 인한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이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한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련 절차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④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⑦~⑩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의 승인을 받아서 발령한다.
- (2) (1)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이/가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u>㉠</u>	<u>㉡</u>	<u>㉢</u>	<u>㉣</u>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④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며, 대체역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민방위대 조직에 포함된다.
- ㄴ.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 ㄷ. 여성은 지원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며,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ㄹ.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자가 생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장·군수·구청장이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 ㄴ.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 ㄷ. 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하나,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지휘권을 행사한다.
- ㄹ.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에 들어갈 것을 빠른 날짜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확정된 집행계획을 통보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까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월 ▲▲일부터 (㉡)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월 ■■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驛舍), 「항만법」 제2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은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
- ④ 지방환경청장은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ㄴ.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ㄷ.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ㄹ.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 ㅁ.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느	드	르	므
①	○	X	○	X	○
②	X	○	X	○	X
③	○	X	X	○	X
④	X	○	○	X	○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만, 건축물·차량·선박·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종류	경계관제	공습관제
ㄱ 특수시설 옥내등	병원의 중환자실	차광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ㄴ 일반교통 관제등화	보행자 신호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ㄷ 철도관계 등화	대기실	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은 차광할 수 있음	소등
ㄹ 일반 옥외등	소방관서 표지등	소등	소등

- ① ㄱ, ㄴ
③ ㄱ, ㄴ, ㄷ

- ② ㄷ, ㄹ
④ ㄱ, ㄷ,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고르면?

- ①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③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한 민방위 대장
- ④ 전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

문 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공부 모임 친구들의 민방위 동원 관련 보상금에 대한 대화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A: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사망하면 사망 보상금은 얼마?

甲: 사망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월평균임금총액은 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해.

A: 만약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고 장애 등급이 4급이라면 장애 보상금을 얼마나 받게 되지?

乙: 장애 등급 4급의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7/12이야.

A: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이지?

丙: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야. 다만 그 지급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

A: 읍·면·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 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재해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지?

丁: 재해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해.

- ① 甲, 乙 ② 甲, 丁 ③ 乙, 丙 ④ 丙, 丁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 보류 대상자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회의원
- ㄴ.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ㄷ. 군수
- ㄹ. 교도관
- ㅁ. 지방의회의원
- ㅂ. 지방공무원인 특별시의 부시장

- ① ㄱ, ㅁ ② ㄷ, ㅂ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ㅂ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의 특전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할 수 있다.
- ㄴ.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에 대하여 대대의 경우 401명 이상 1천700명 이하로 편성한다.
- ㄷ.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 ㄹ.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한 경우 같은 항구·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한다.
- ㅁ.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21.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양양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위원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 할 수 있다.
- ㄴ.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예비군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명령 발령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인 예비군대원 甲이 수임군부대의 장 乙로부터 전화로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에 응하라는 소집통보를 받았다면, 소집통지를 받은 甲은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 ㄴ. 예비군대원 甲이 출타 중인 관계로 수임군부대의 장 乙로부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丙(甲과 같은 세대 내의 성년인 누나)은 甲에게 직접 소집통지서 원본을 전달하여야만 한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 乙이 예비군대원 甲에게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려면 미리 甲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20일 전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해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 乙은 예비군대원 甲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4.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입은 중상으로 인해 2021. 6. 5. 민간의료시설에 입원한 상태로 750일 동안 치료받은 후 퇴원하였고,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2023. 7. 5.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였다면 7,500만 원에 해당하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예비군대원이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육군참모총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재해보상금 중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한다.

문 2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적(敵) 1개 소대가 X도 Y시 A마을에 침투하였고, 이에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의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령하였다. 그 후 A마을에 침투한 적은 모두 소멸되었다.

한편 동원명령 및 적 소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 (1) 동원 대상이었던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명령을 받을 당시 뻥소니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서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2) 동원된 예비군대원 乙은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A마을로 출동하였다.
- (3) 동원된 예비군대원 丙은 A마을에서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 (4) 동원된 예비군대원 丁이 A마을에 침투한 적을 고립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에 지장을 주는 주민 戊 소유의 돈사(豚舍)를 발견하였고, 丁은 이러한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였다.

<보 기>

- ㄱ. 甲은 자신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 ㄴ. 출동한 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적을 소멸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ㄷ. 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해당하는 보상 대상자가 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적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戊 소유의 돈사를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여 돈사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戊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6. 예비군법령상 징역형의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ㄱ. 甲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소인 X시 Y동 112번지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X시 Y동 210번지로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 ㄴ. X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乙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자 그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였다.
- ㄷ. 수탁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A마을에 무장폭도가 침투하자 그 무장폭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조명(照明)의 제한과 관련된 긴급조치를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조치의 대상자인 마을 주민 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ㄹ. 동원명령을 받은 丁은 재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사유로 하여 동원을 연기하였다.

- (1) ㄱ > ㄴ > ㄷ > ㄹ (2) ㄴ > ㄹ > ㄱ > ㄷ
 (3) ㄷ > ㄱ > ㄴ > ㄹ (4) ㄹ > ㄷ > ㄱ > 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명시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 아닌 것은?

- 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②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
-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연재난”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
- ㄴ.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을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재난의 복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ㄷ.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하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국가재난관리기준”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 · 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현장에서는 시 · 군 · 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인명 탐색 · 구조의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ㄴ. 재난현장의 총괄 ·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 · 군 · 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다.
- ㄷ.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한다.
- ㄹ.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시 · 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

- | | | | |
|--------|--------|--------|--------|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다음 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	느	드	르	므
①	X	X	○	X	○
②	X	○	X	○	X
③	○	X	X	X	○
④	○	X	○	X	○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부합동점검단의 안전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를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ㄷ.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을 요구 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2. 다음 사례에서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X도 Y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Y시 소방서장 甲은 재난대응활동 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 수단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乙은 위험수준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Y시 시장 丙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조치를 요청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丁은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조치를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이 시장으로 있는 Y시 Z지역에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수반한 화재로 인하여 Y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발생하였다.

—————<보 기>—————

- 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Z지역 주민은 피해상황을 甲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甲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 Z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ㄷ. Y시는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은 Y시의 조례로 정한다.
- ㄹ. 甲이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요청 조치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하되,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ㅁ.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Z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국가와 Y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Z지역 주민의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원인 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ㄷ.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의 제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 ㅁ.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가가 매년 5월 25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행사를 실시한다.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고위험이 있는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ㄷ.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가 제정·고시한 안전관리 현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법령 I - 헌법

문 1. 헌법 조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30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③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④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고,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며,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문 2.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이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데 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에 교통비, 중식비만 추가로 지급할 뿐, 그 밖에 평일 조·석식비, 휴일 조·중·석식비, 의복비, 거주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비용 또는 병역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비용조차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역병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 ③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분할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념하게 하는 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3.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곧바로’ 등록될 권리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
-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한 뒤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조치이며,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이 없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해당 부분은, 취소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전동킥보드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인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4.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 자’에 관한 부분이 대마 매매행위의 법정형에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 내지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대마의 해악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의 해악성과 동일하다거나 경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② 「군형법」 제92조의6이 ‘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이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달리 취급한다고 볼 경우에도, 이와 같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차별을 금지한 영역인 성을 이유로 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 ③ 「결핵예방법」 상 타인을 결핵에 감염시킬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한 형벌조항에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해당 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것이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매개행위를 다른 감염병의 전파매개행위와 차별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율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조세회피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 규율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외의 재산 소유자’는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 5.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협약에 전부 위임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②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기부’ 부분은 운전과 같은 무형적인 노무제공도 ‘기부’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 ③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어떠한 행위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로서 처벌되는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는데, ‘연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한 해 동안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지, 수년간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10억 원이 되면 한 해 포탈세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문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청구인의 이름, 수감번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형사재판의 사건번호, 규율위반의 내용과 징벌처분의 결과는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로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해당 부분은 정보주체가 과거의 혼인이나 사실혼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및 정보주체의 사망한 자녀의 존재 및 그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本)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하도록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 중 ‘특별한 사유’란 그 자체로는 너무나 불확정적인 용어임에도 ‘특별한 사유’를 수식하는 문구나 ‘특별한 사유’의 예시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④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7.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금지되는 행위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명확하여, 위 조항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선거운동에서 다소 전통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확성장치의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확성장치의 출력수나 사용시간을 규제하는 입법이 확성장치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달성을 할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사용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므로, 「공직선거법」 상 해당 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
- ④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해당 부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

문 8.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 개발부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대통령이 2016년 2월 10일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조치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여 기업들에게 영업손실이나 개성공단 자회사나 영업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 등 권리의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은 공공 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가 아니라 이러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부담의 부과와 그 소유권의 국가귀속이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제한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화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는 개성공단 내에 존재하는 토지나 건물, 설비, 생산물품 등에 직접 공용부담을 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공익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과는 구별된다.

문 9.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소송법상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특별히 법률상 절차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판단 누락을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문 10.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은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관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을 통해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례관계를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광고물 제작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민간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매체 구입 및 집행은 언제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부광고의 대행 업무를 수주하고자 하는 광고업계 종사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1.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혀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문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는 공개하나,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④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으나, 정보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3. 현행법상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되는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하며, 행정심판 절차는 범률로 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職)에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문 14.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 ②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지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직도 상실되어야 한다.

문 15.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 |
|------------------------|---------------------|
| ㄱ. 국가인권위원회 | ㄴ. 「검찰청법」 상 검사 |
| 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 ㄹ.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 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 ㅂ. 국가경찰위원회 |

- ① ㄱ(O), ㄴ(X), ㄷ(O), ㄹ(X), ㅁ(O), ㅂ(O)
- ② ㄱ(O), ㄴ(X), ㄷ(O), ㄹ(X), ㅁ(O), ㅂ(X)
- ③ ㄱ(X), ㄴ(O), ㄷ(X), ㄹ(O), ㅁ(O), ㅂ(X)
- ④ ㄱ(X), ㄴ(O), ㄷ(X), ㄹ(O), ㅁ(X), ㅂ(X)